

새만금국가산단 입주계약해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

새만금개발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“(주)산하첨단소재”에 대해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와 관련하여 입주계약해지 처분 통지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06. 10.

새만금개발청장

1. 제 목: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계약 해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처분사유: 입주계약체결 후 3년 내 공장 건설 미착수 및 공장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
3. 근거법령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2조
4. 처분의 제목: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계약의 해지
5. 공고대상
 - 가. 기 업 명: (주)산하첨단소재
 - 나. 대 표 자: 장 재 영
 - 다. 반송사유: 폐문부재
 - 라. 공고내용: 불임참조
6. 공 고 일: 2026. 6. 10.
7. 공고방법: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게시

8. 기타사항

가.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그 밖에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(☎ 063-733-1253, 111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입주계약해지 통지서 1부. 끝.